

# 정 관

주식회사 코리아씨키트

# 정 관

시행	1972.	4.	5
시행	1986.	2.	27
변경	1987.	2.	27
변경	1989.	3.	17
변경	1990.	3.	16
변경	1991.	3.	15
변경	1991.	10.	15
변경	1992.	3.	20
변경	1994.	3.	18
변경	1995.	3.	17
변경	1996.	3.	15
변경	1997.	3.	21
변경	1998.	3.	20
변경	1999.	3.	19
변경	2000.	3.	24
변경	2001.	3.	23
변경	2004.	3.	19
변경	2005.	3.	28
변경	2011.	3.	18
변경	2012.	3.	23
변경	2014.	3.	21
변경	2016.	3.	25
변경	2019.	3.	25
변경	2021.	3.	29
변경	2022.	3.	28

#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코리아씨키트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CIRCUIT CO., LTD.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 인쇄회로기판 부품조립업
3. 금형제작업
4. 수출입업
5. 부동산임대업
6. 동박 적층판 제조업
7. 독극물 수출입업
8. 전자, 전기 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업
9. 계열회사 등과 제품 또는 용역의 공동 개발·판매 및 설비 전산 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사업
10. 전자 계산조직, 정보시스템, 동 관련 제품 및 부품, 부속품의 제작, 판매업
11. 소프트웨어의 제작,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12. 전산시스템 및 정보처리 기술 용역의 제공 및 판매
13. 신기술사업, 창업 관련 투자·관리·운영사업 및 창업 지원 사업
14. 기술 연구 및 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용역 수탁업
15. 시장조사, 경영 자문 및 컨설팅업
16.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 재산권의 라이선스업
17.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용역사업
18. 위 각항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사의 존립기간) 삭제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c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제7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천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은 일천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삭제

⑦ 본 조에 따른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사채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제11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나.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이사회 결의로 외국투자가에게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0% 범위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제11조의3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제11조의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사. 대규모 자본적 지출 및 긴급한 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투자자 및 계열사 등의 투자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아.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제휴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외국투자가에게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30% 범위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일반공모증자)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경영계획등에 의한 구체적 경영 활동 목표를 설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에 동 목표 달성률이 저조할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나.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다.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5(주식의 소각) 본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본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2조(시가발행) ①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의 결의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써 정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3 장 사 채

제16조(전환사채의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로 한다. 단,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전환 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3조의 규정은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직전일로 한다. 단, 위 기간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3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8조(소집시기)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이종으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증권거래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본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3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 회사의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

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 사, 이 사 회, 감 사

제29조(이사, 감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 사외이사 수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본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로 한다.

제30조(이사,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한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보선하는 경우 포함)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2조(이사,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3조(대표이사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제34조의 2(이사의 보고업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 3(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상법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의 유고시에는 제33조에서 규정한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대행한다.

제37조(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익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향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9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계 산

제42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 6주일 전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전항의 서류는 감사의 의견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일전부터 본사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 1 (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44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으로 하는 배당은 이익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 지급한다.

제46조(배당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47조(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세칙내규) 당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 ③ (발행인) 당회사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 전원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주식회사 코리아씨키트

발기인 송 동 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293번지의 2

발기인 현 호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8번지

발기인 오 경 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360번지의 7

발기인 김 상 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도동 204번지의 16

발기인 송 영 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607번지의 7

발기인 조 성 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번지의 7

발기인 오 숙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293번지의 2

## 부 칙

1986.2.27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 (경과조치) 제6조, 제7조에 대하여는 1987년 8월 31일 이전 주식 액면 병합교체 발행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1987.2.27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89.3.17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0.3.16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1.3.15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1.10.15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2.3.20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4.3.18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5.3.17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6.3.15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9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본 정관개정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시행한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예)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997.3.21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 ① 본 정관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우선하여 매년 해당년도에 보통주식에 대해 지급된 배당금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비누적적인 방법으로 년 1%(“우선 주식배당율”)를 더 배당한다.
- ② 본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제1항의 우선주식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정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우선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부 칙

1998.3.20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9.3.19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0조의3항은 199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3.24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1.3.23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4.3.19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5.3.28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3.18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3.23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2, 제34조, 제34조의 3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3.21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3.25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3.25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3.29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3.28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